



EU, 금융거래세 도입 합의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EU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야기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채권, 주식,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국제 거래에 대해 세금¹⁾을 부과하는데 합의하고 향후 관련 계획을 추진하기로 함.

- EU 27개 회원국 중 독일, 프랑스 등 11개국²⁾이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해 찬성한 가운데 영국, 스웨덴, 핀란드 등이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아 도입 추진이 가능해 짐.
- 금융거래세 도입이 확정되려면 추진 계획에 대해 EU 회원국과 유럽 의회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고, 금융거래세 도입 참여 국가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함.

■ 세율이나 세수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함.

- 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말 주식과 채권에 0.1%, 파생상품에 0.01%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, 이번 회의에서는 세율 등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되지 않음.
-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세율이 적용될 경우 연간 세수는 최대 570억 유로(약 82조 원)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.
 - 세수 추정은 EU 27개국 모두의 참여를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참여국이 줄어들수록 세수 규모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임.

■ EU 내에서 현재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임.

- 프랑스는 2011년 말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 이후 독자 도입을 선언하고 2012년 8월부터 시가총액 10억 유로 이상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때 0.2%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함.³⁾

1) 일명 토빈세로도 불리는 금융거래세는 단기성 외환거래 과정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급격한 자금 유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제 도입. 1970년대 후반 핫머니(Hot Money), 즉 국제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 가치가 불안정해지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예일대의 제임스 토빈 교수가 처음으로 주장.

2)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, 스페인, 오스트리아, 벨기에, 포르투갈, 그리스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에스토니아.

- 독일은 1991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바 있으며, 스웨덴은 1984년 증권 및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하였다가 7년 만인 1991년에 폐지하였음.
- 영국은 주식거래에 대해 인지세 형태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세의 목적이 투기 억제에 있지 않아 취지가 다름.

■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찬성 논리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과 투기성향 억제임.

- 근로소득을 비롯해 상속·증여 등 대부분의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처럼 금융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는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며 단기 투기성 국제거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
- 금융거래세는 국가 간 금융 분야 세금제도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.
- 유로지역 국민들은 금융위기 주범인 은행들에 대한 과세를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임.
 - 금융거래세 도입을 통해 구제금융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

■ 그러나 경제상황도 어려운데 규제가 더 늘어난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 EU 전역에서 시행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됨.

- 영국, 핀란드, 네덜란드, 스웨덴 등은 금융거래세가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음.
 - 금융거래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.
 - 금융거래세는 거래되는 지역을 근거로 거래 당사자 양쪽 모두에게 과세되기 때문에 금융거래세 도입에 반대하는 영국 등도 결국 세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문제(risk of relocation)가 발생할 수 있음.
- Wall Street Journal은 합의가 신속히 이뤄진다면 해도 2013년 하반기 이전에는 과세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

(Wall Street Journal, 10/9)

3) 일각에서는 프랑스가 2012년 8월 금융거래세를 도입한 것은 자본유출입 관리보다는 세수확보 목적인다고 주장함.